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의료적 판단 및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함(안 제7조).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이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을 금지함(안 제16조).
-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9조).

II. 검토의견

1.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

- 개정안 제17조는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업무상 알게된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개정안 제19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 「의료법」²⁾

1)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4) 등 보건의료분야의 유사입법례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안의 보상위원회 등이 취급하는 ‘업무상 비밀’에는 피해자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어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법정형을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료지도원)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3)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① 약사·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 을 조제·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관계 기관 의견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단기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협조에 대해 특별한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해 별도의 보상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의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인과관계 판단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존재하고 여러차례 기준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사례 등에 대해 폭넓은 국가지원을 실시한 바 있어 법안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기존 감염병예방 관련 피해보상 체계의 예외로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⁵⁾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함한 모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으로 인과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미 코로나19에 한하여 접종과 피해 간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개정안 제5조가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임에도 같은조 제3항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상은 국가의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행위로 인한 생명·신체 등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해 조절적 보상을 하는 제도로서 당초부터 국가의 행위와 국민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노정된 제도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조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인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은 정)

5)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에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